

보도시점 2024. 12. 23.(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4. 12. 20.(금)

이젠 여행용 가방 살 때도 환경표지 확인하세요

-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 생활과 밀접한 제품 6종 신설, 24종 제품 개정 및 10종 제품 통폐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2. 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40종 안내.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이광성	(044-201-6711)



□ 제도 개요

- (목적)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서비스 포함)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수준 및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 (시행기간/주체) '92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기관)



□ 추진 경과

-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환경표지제도 도입('92.4)
- 환경표지제도 근거법령 제정('94.2, 現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가입(現 60개 지역·국가 37개 제도, '97.9.)

□ 인증 현황('24.11월 기준)

- 158개 대상제품군의 인증기준 운영, 18,490개 제품에 인증부여

분야	제품군	분야	제품군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21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1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36	6. 산업용 제품, 장비	17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27	7. 복합용도 및 기타	25
4. 가정용 기기·가구	15	8. 서비스	6

- (인증기간) 3년(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
- (인증기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 환경성 및 품질, 경제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정 및 기준설정, 동일 용도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을 갖는 기준
- (인증사유)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7대 인증사유* 범주 운영
 - * 1) 자원순환성 향상, 2) 에너지 절약, 3) 지구환경오염 감소, 4) 지역환경오염 감소, 5) 유해물질 감소, 6) 생활환경오염 감소, 7) 소음·진동 감소

붙임 2

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40종 안내

- (신규 품목)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제품 6종 신설
- (기준 개정)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24종 제품 개정
 - (산업여건 반영) 생분해성수지제품, 세탁용세제 등 8종 제품
 - (인증범위 확대) 인쇄용지, 포장재 등 5종 제품
 - (환경기준 개선) 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 11종 제품
- (통폐합) 시장 변화,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종 제품 통폐합
 - (폐지) 난방용자동온도조절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가스캐비닛 히터(시장성 상실), 바닥데크용방부목재·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소방용 스프링 클러헤드(해당 규정에 환경성 기준 포함)
 - (통합)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수산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수지제품 기준으로 흡수